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2823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도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10448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중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4.경 D와 사이에 20,000,000원의 전자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은 2003. 10. 29.경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3,000,000원으로 한정근보증을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은 2022. 9. 27. 기준으로 원금 13,241,002원, 이자 40,692,812원으로 원리금 합계 53,933,814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C은 그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2,997,000원의 대출금채무, E 주식회사에 대하여 179,41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

다. C이 보유한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유일한데, 2022. 1. 24. 아들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22카단104489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22. 7. 26.경 가처분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7. 26. 접수 제253700호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에 기해 마쳐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아직 증여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예정될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C은 채무초과 내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의 악의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부당히 소액이어서 이를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아직 증여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예정될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민법 제406조 제1항),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554조),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증여’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여계약은 2022. 1. 24. 당사자인 C과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미 성립하였고, 피고가 위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증여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가처분결정은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된 문제일 뿐, 원고가 사해행위 내지 그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소액이라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C이 이 사건 대출금 관련 보증채무를 비롯해서 원고 및 E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C의 아들이면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대출금 관련 보증채무를 비롯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위 채무를 초과하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C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야기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만 할 뿐,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채무자 C의 소유로 남아 있고, 위 증여에 기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점, 만약 증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명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처분등기 이후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등의 집행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가처분등기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에도 위 증여에 기한 위 가처분등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은 점, 만약 위 가처분등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될 채권자와 수익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선집행이 된 가처분등기 때문에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우선적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셈이 될 것이어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에 기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를 마치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수익자로 하여금 위 가처분등기 관련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관련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용